

韓國老人에 對한 社會福祉 政策

河 相 洛

〈서울大 社會事業學科 教授〉

I

老人에 대한 明確한 개념規定을 하는 것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從來에 있어 老人이란 60歲 前後의 연령을 基準으로 말하고 있고 또 “人間 70 古來稀”라 하여 70歲까지 장수하게 되면 이를 稀貴한 큰 慶事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國民의 평균수명이 68歲로 되고 보면 上記한 바와 같은 從前의 老人規定은 現實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老年學에 관한 研究자체도 始作된지 時日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合理的이고도 科學的인 老人의 定義는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러나 筆者의 見解로는 이처럼 老人을 다만 年齡的으로 規定하는 一般的인 老人觀은 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거기에는 身體的, 知的, 情緒的 및 社會的인 側面을 망라한 綜合的인 規定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老人을 生理的 年齡이라든지 心理的 年齡에 의해서 區分한다는 것은 老人의 극히 작은 一部分만을 보는 것으로서 人爲的 區分이라는 批評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老人이란 人間의 여러 側面의 老化의 繼續的인 과정이며 人間의 老化現象은 人間의 出生과 同時에 우리들의 全生活영역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老人의 規定에 있어서 또 하나 빼어 놓을 수 없는 요소는 個個老人自身の 老齡에 대한 主觀的인 思考와 行動을 들 수 있겠다. 現代와 같이 個個人의 役割을 重要視하는 時代에는 個個人의 年齡증가에 따라서 日常生活에서 맡는 役割도 항상 變化해 가기 마련이며 이러한 役割遂行도 高齡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장애나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高齡에 있어 이러한 시기가 個個人에 있어서의 老人의 始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時期에 個個人은 自身이 老人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또 그 日常生活에서도 從前에 없던 새로운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身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큰 變化를 겪게 되는 것이다.

II

8. 15해방과 同時에 歐美의 外來文化가 急速度로 流入되고 6. 25로 인하여 國民大多數의 生活에 急激한 큰 變動을 가져옴으로써 老人의 地位와 權위도 크게 低下되었다. 우리나라 現 老人은 家庭生活과 社會運動 어느 쪽에서나 疎外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 生活의 모든 면에서 다음과 같은 混亂을 초래하고 있다. 즉

- ① 社會와 文化의 急遽한 變遷에 對한 適應이 容이치 못하여 老人은 不安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 ② 젊은 世代와의 思考 및 行動의 不合致로 老人은 日常生活에 있어 갈등과 고민이 늘어가다
- ③ 새로운 科學의 發達과 기계화는 老人의 經驗과 知識을 점차 不必要하게 하고
- ④ 새로운 技術과 전문적인 知識을 가진 젊은 世代의 進出로 因하여 勞動市場에서 노인층은 점차 축출 당하고
- ⑤ 老人을 경시하고 아동을 더 重要視하는 社會의 一般的 경향은 老人의 고독과 불만을 증대케 하고
- ⑥ 老人의 身體的, 精神的 健康의 쇠퇴는 이들의 活動을 감퇴시키게 되고

⑦ 과거를 고집하고 生活領域의 점진적인 축소로 老人은 自我개념의 混亂을 가지게 되었다. 또 大多數의 老人이 當面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老後의 정년퇴직이라 하겠다. 많은 경우에, 停年退職은 老人들이 事前에 계획한 시기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고 앞으로 數年 더 充分히 職場生活을 할 수 있는 時期에 맞이하게 된다. 이에 加一層 老人들에게 불리한 것은 急遽한 社會變遷에 따라 職場의 停年退職年齡이 점차 低下하는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一般 公務員의 경우는 停年이 60歲로 되어 있으나 一般 私企業에서는 55歲 前後하여 職場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 常例인 것 같다. 이와같이 現 俸給生活者에게는 停年은 一種의 社會生活의 終了를 意味한다. 즉 收入의 단절, 지위 및 권위의 低下, 대인관계의 감축, 여가 및 구직난 등은 이들에게 큰 고통인 同時에 生活의 意義마저 否定하게 만든다. 특히 우리나라 老人들은 大部分의 경우 그들의 過去 全收入은 家族의 生活費 및 子女養育 등에 모두 소비되고 自身の 老後生活에 對한 비축은 전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같은 現實에 直面하면 不安, 恐怖 및 갈등을 가지게 될 것은 分明하다. 또 老後에 여러가지 與件이 그들의 子女들에 의존해서 生活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고 있으므로 事前에 비축되고 계획된 停年退職을 함이 바람직하지만 이와같은 停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先進國에 있어서도 그렇게 많은 예는 아니라 하겠다. 先進國에 있어서는 個人的 비축, 社會保險, 老人年金, 또는 退職金 등의 制度가 있어 老後生活에 對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停年後에는 物價高, 의료비의 증가, 또는 기타 예기치 못한 費用등으로 이들의 日常生活費를 충족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故로 從前에 自身이 維持하여 오던 그 水準의 社會生活을 老後에 계속 維持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經濟的 문제外에 老後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一定한 職業없이 24時間을 如何히 보내느냐 라는 것이다. 過去에는 하루를 바쁜 職場生活을 通하여 生計費도 벌고 또 社會的 參與와 공헌도 하고 自我의 人格的 社會的 向上과 發展을 하였으나 停年을 맞이하던 여가시간은 많으나 할 일은 없고 또 세월이 갈수록 社會에서 疎外될 뿐 아니라 家庭과 親戚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現實에 처하면 老人은 自身の 새로운 日常

生活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또 새로운 自我개념도 再確立하여야 한다. 그러나 平生동안 習得한 固定된 生活樣態를 변경하고 또 固着된 자아개념을 새로이 再確立함은 무엇보다도 비통한 일이고 또 쉽지도 않다. 老齡에 달하면 身體的·精神的 건강의 弱化和 社會的 地位와 권위의 低下로 인하여 從前에 받던 대우나 존경을 못받게 되어 日常生活에서 욕구좌절과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또 失望과 비통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다 하겠다. 故로 停年退職은 우리 全生活의 意義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現代職業人이 日常生活에서 職場을 떠나 自己 全家族과 同席하여 즐길 수 있는 時間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될까? 現在 우리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하루의 大部分을 職場에서 消日하고 밤에 귀가하여 家族과 휴식하는 시간은 不過 數時間에 지나지 않는다. 또 우리들은 하는 일 없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의 罪惡으로 생각하고 또 여가를 유익하게 보내는 方法은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多忙한 職場生活를 하다가 老齡에 달하게 된다. 여가를 유익하게 보내자면 이에 관한 事前知識과 技術의 習得이 있어야 한다. 젊은 時節에 이것에 대한 準備없이 老齡에 달하여 이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身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 하나의 큰 부담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老人의 여가선용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老人의 고독감 또는 소외감이라 하겠다. 老齡에 달하면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社會에서 분리되어 간다. 이와같은 分離는 社會, 家族, 親知가 造成하고 있다고 老人들은 흔히 말하고 있다. 一面 老人自身이 他人과의 대인관계에 있어 一種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老人이 젊은 世代를 경원하고 또 비난하고 또 새로운 社會風俗을 멀리하는 것 등은 즉 老人自身이 社會로부터 自身을 分離하는 것이다. 老人의 고독감과 疎外感은 老人自身의 自發的인 努力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겠다. 즉 새로운 社會와 知識을 배우고 또 젊은 世代를 理解하려고 努力하며 급변하는 社會에 적응할 수 있는 자아개념을 再構成하여야 한다. 老人은 새로운 生活態度를 배워서 現 社會에서 젊은 世代와 더불어 自己生活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老人이 不治의 疾患으로 病院에서 長期入院을 하여야 할 경우는 이들의 病院生活는 從前의 自己生活과는 完全히 分離된다. 그러나 老人은 이와같은 現實에서도 적응하고 이를 이겨나가야 한다. 이와같은 老人의 努力에 대하여 家族的 또는 社會的 도움이 있어야 함은 말할 必要도 없다.

III

現 우리들의 存在는 모든 面에 있어서 父母를 포함한 老人들의 努力과 保護의 結果이기에 老人의 人格과 존엄성은 人間社會에서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保障되어야 한다. 大多數의 老人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그 全生活을 家族의 扶養과 子女教育에 바쳐왔으며 國家社會의 發展에 직접·간접으로 공헌을 하여왔다. 그들이 이와같은 희생과 노력을 하는 동안에 老衰하여 老人이 된 것이며 또 우리들 자신도 누구나 例外없이 언젠가는 老人이 된다. 따라서 人間은 老齡에 達하여 身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변화에 맞추어 生活하며 또

老人들이 自身에게 殘存하는 能力을 健全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自己 知識과 經驗을 個人的으로나 또는 社會的으로 有益하게 活用하게끔 努力할 수 있는 活路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 즉 老人에게는 本人의 희망과 능력에 상응한 社會活動과 社會再活의 기회가 부여되어 이들의 幸福하고 安易한 生活이 保障되게끔 全人類가 共同努力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最近에 와는는 UN의 「老人權利憲章」 또는 美國의 「老人憲章」 등이 策定되고 또 日本에는 “老人의 날” 등이 制定되어 있음은 現在까지 소외되어 오던 老人에 대한 존경의 정신이 부분적으로나마 社會 전체로 부각되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이는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전함에 따라 팽배한 人間賤視 특히 老人輕視의 思潮에 대한 하나의 警鐘이라 하겠다. 또 現 社會는 生産能力을 가진 者만을 존경하고 젊은 者만을 우대하며 또 경제력이 강한 者만을 人間으로서 대접하고 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또는 “人間 自體의 高貴性” 등의 옛말은 이미 人間社會에서 사라지고 다만 人間이 그가 지닌 經濟的인 生産能力에 의해서 人格을 평가받을 수 밖에는 없게 되어 있다. 아무리 화려한 過去 社會 活動을 한 者라 할지라도 그 地位를 떠나서 그 利用度가 없게 되면 孤獨과 빈민의 生活이 계속될 뿐이다. 이는 모든 人間에게 例外없이 찾아오게 되는 必然的인 運命임에도 불구하고 現代人은 未來의 自身들이 봉착할 이 運命에의 對備策에는 너무나 소홀한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人間老後의 生活保障을 위한 責任은 누가 지는 것일까? 個人, 子女, 家族, 國家? 從前에는 그 責任은 주로 本人, 子女 및 家族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점차 國家社會의 責任으로 넘어가는 경향이다. 이와같은 理由로 社會福祉 또는 老人福祉策이 크게 논란되기 始作하고 있다.

IV

一般的으로 老人福祉라 하면 大端히 애매한 개념으로 파악되어 具體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하여 老人生活의 全面的 保障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養老院이나 最少限의 生計維持를 意味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자면 老人福祉는 老人이 하나의 獨立된 人間으로서의 基本的 욕구충족과 그 文化的 生活維持를 하게끔 함을 意味한다고 하겠다. 老人도 그 基本的 欲求는 우리 一般成人과 同一하다. 그러나 老人은 용돈도 不必要하고 다만 三時의 영양가있는 좋은 食事を 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生活할 수만 있으면 老人福祉는 충족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老人도 육체를 가진 人間이므로 生存을 위하여 이와같은 것이 不可缺하다. “人間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老人의 단순한 육체적 生存이 그들의 人間生活의 全體가 될 수는 결코 없다. 老人도 社會的 動物이며 社會的 活動을 함으로써 他人과의 正當的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一定한 社會的인 役割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生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즉 老人도 社會的 活動을 하기를 원하고

고로 그 임의가 없다. 個人으로서가 家庭에 있어서가 老人도 國家의 一員으로서 役割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老人福祉와 社會福祉가 相異한 것이 있다면 그 수혜자가 老人이라는 것 뿐이다. 이와같은 의미에서 老人福祉란 老人生活의 經濟的인 側面, 肉體的인 側面, 精神的인 側面 및 社會的인 側面 등의 다양한 側面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故로 노인복지란 老人生活의 一部分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生活全面的 要求의 충족을 할 수 있게끔 계획되고 綜合化된 老人福祉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V

老人保護에 관한 근대적인 시책으로서 世界 최초로 실시된 것은 佛蘭西의 1850년의 老人年金制를 들 수 있다. 그 後 獨逸의 1889년의 強制加入 老人保險을 비롯하여 丁抹, 英國 및 美國등에서도 各種의 保護制度 및 施策등이 實施되어 오고 있다. 즉 1908년에 英國에서는 養老年金法이 公布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70歲以上の 者로서 過去 20年間 계속하여 英國內에 居住하였으며 犯罪者가 아니고 또 정신병자가 아니며 現在 빈민구조금의 支給을 받고 있지 않으며 또 自己家族扶養을 태만하게 하지 않은 者로서 年收 31파운드 以下の 者에 限하여 週 1~5실링의 年金을 給與하였다. 그러나 英國의 여러 식민지에서는 이보다 앞서 養老年金制度가 實施되고 있었다. 그 例로서 뉴질랜드에는 1898年 養老年金制度가 施行되기 시작했다. 그 受給條件은 65歲 以上者로서 25年間 식민지에서 居住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年間 52파운드 以下の 收入을 받고 있는 者라야 하며 그들이 받는 年金額은 年間 18 파운드였다고 한다.

丁抹은 1882년에 受給者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가양로금고” 설치를 決定하고 그것을 實施코자 하기 直前に 獨逸의 무료양로보험제도 실시의 영향을 받아 結局 1891년에 보험료의 부담없는 養老保險制度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受給條件은 10年以上 계속 國內에 居住하였고 또 公的인 救助를 받은 일이 없으며 또는 飢餓·부랑生活을 하여 처벌받은 事實이 없고 또 그 궁핍한 生活이 自己過失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60歲 以上の 者로서 自活할 수 없는 者에 限定하고 있다.

獨逸의 養老年金 및 卹金年金制는 1889년에 國會의 決定을 보아 1891년부터 實施되었다. 그 結果 임금노동자는 男女區別없이 60歲 以上으로 年收入 2,000마르크 以下の 者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외에도 佛, 伊등의 나라에 있어서도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이와 유사한 養老年金制度를 채택하였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外國의 老人保護는 社會的 또는 老人 自身이 解決하는 경향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우리나라의 옛 老人保護는 三國時代 以後 歷代 國王이 重要한 하나의 惠政으로서 기회

을 王이 應당하여야 할 하나의 實務로 삼고 또 王이 老人을 후대하고 이를 勸諭수범함으로써 百姓들로 하여금 敬老思想을 가지게 하였다. 이와같은 理由로 老人을 후대하는 方案을 施政에 있어 여러 方面에 반영하여 온 기록이 있다. 그러나 四窮保護의 법주에 속하지 않는한 官穀扶養은 하지 않고 다만 기회있을 때다다 이들에 특별나 恩혜를 베풀어 줌으로써 이들을 후대하여 백성들이 老人保護에 보다 더 힘쓰게 하였다. 李朝時代에 시행한 老人保護策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의지할 곳 없는 빈곤한 老人에 대한 生活保護(三國以後의 恒例)
- ② 國王 巡回時는 地方의 高齡者를 接見하여 衣·食을 賜하거나 饗宴을 베푼다(三國以後)
- ③ 國慶時는 궁중에서 老人의 宴을 베푼다(고려이후)
- ④ 耆老社를 設立하여 文官 正二品 以上の 者중 70歲 以上된 者를 召集하여 國王이 매년 春秋에 宴樂을 같이 한다(李朝初期 以後)
- ⑤ 老人으로 100歲 以上の 者에게는 白米를 賜하고 每月 酒肉을 賜하여 90歲 以上の 老人에게는 爵과 酒肉을 賜하고 80歲 以上の 老人에게는 爵을 賜하고 또 매년 仲秋에는 酒宴을 베풀어 地方에 있는 老人에 對하여서는 地方官으로 하여금 접대케 하였다. 一品 以上の 者에게는 杖을 賜하고 또 功臣의 父母·妻로서 70歲 以上の 者에게 대해서는 每月 酒肉을 賜하였다(李朝 世宗 以後)
- ⑥ 老人職을 設定하여 位階를 주어 존경을 받게 한다(李朝 숙종 以後)
- ⑦ 死刑·또 徒流刑에 處罪된 者의 집에 老病의 父母가 生存하고 있고 그를 부양할 者가 없을 때에 特히 減刑 또는 換刑의 處分을 하여 집에 留居하여 老親을 保護케 한다(李朝 以後).

以上은 우리나라 古來로 내려오는 家族制度와 敬老思想에 기인하는 美風이기도 하나 그 反面에 이 結果 老人을 존경하고 또 老人의 절대적인 위력에 젊은층이 無條件 위압당하게 되며 또 젊은者들 중에서도 老人然하는 耆老風潮를 일으키게 되었고 또 사소한 권력만 가지게 되어도 “영감”이란 칭호를 받으려 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在來의 우리나라의 老人保護는 主로 가족제도 內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歐美의 養老給與나 老人保險制度와는 그 基本理念上으로 根本的으로 相異하다. 그리고 現 우리나라의 老人福祉施策으로서는 우선 生活保護法에 의한 65歲 以上の 者에 대한 生計保護, 의료보호, 매장조치 등의 保護를 들 수 있다. 이는 無依無托한 국민노인에게 國家가 生計扶助를 하여 줌으로써 生活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수혜자수는 78年 11월 現在로 289,013名이며 其中 65歲 以上 世帶主의 受惠家口員數는 120,976名으로 全體(영세민구호대상은 제외)의 約 41%에 해당된다. 此外에 全國 養老施設 45個所에 수용되어 있는 2,576名의 불우한 노인 있다. 이들 養老施設의 보호는 各各 財政的 또는 인적자원사정의 相異로 保護의 질이 同一하지 않으며 또 이에 對한 革期的인 改善이 要望되고 있다. 특히 養老施設保護는 美軍政以

그러나 이 정보조차도 미약하여 현저한 성취를 보이기에는 많은 한계에 직면 있다.

근래에 와서는 社會的 要請에 따라 一部 복지기관의 노력에 의하여 노인정·노인대학 또는 老人學校, 老人會, 敬老잔치 및 老人生日잔치 등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政府의 정책지원 또는 민간의 지지가 미약하여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大韓老人會의 發表에 따르면 1978年 10月 현재 全國 4,870個 老人亭의 會員이 913,507名이라 한다. 이들 大部分의 老人學校 또는 老人亭의 사업 또는 서비스內容은 여러가지 이유로 충실을 기하지 못하고 또 會員老人들의 要求에조차 미흡한 실정에 있다. 그외에도 個個의 특수한 老人클럽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全國的인 실태파악은 아직 되어있지 않고 있으나 그 中에는 착실히 건전한 活動 및 사업전개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외에도 國民福祉年金法이 公布되어 실시직전에 있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 퇴직금제도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어 老年生活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古來로 내려오는 경로사상의 美風에 기인하여 老人의 保護는 過去에 있어 주로 家族制度內에서 이뤄지고 一般社會問題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서구화 또는 핵가족화 경향에 따라 노인 문제는 시급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써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에 있어서도 歐美式의 施策이 도입되기 始作하고 있다.

VII

老人에 대한 個人的, 社會的 태도는 그 나라 그 時代의 老人觀과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老人觀은 老人 그 자체의 本質이나 그 時代의 사회경제 및 家庭生活樣相 등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고 이와 同時에 過去의 영향 및 現在의 老人의 特權, 役割 또는 장애에 대한 기대등에 결부되어 있다 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現在 우리나라의 一般 老人保護는 주로 個個의 家庭에서 이뤄지고 있고 不具老人 또는 經濟的으로 곤란한 老人등과 같이 極히 불우한 老人에 대한 保護는 部分的으로나마 政府施策과 施設에 의해서 保護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또 個個 一般家庭에서 家族들과 同居하는 老人의 경우에도 젊은 世代成員들과의 思考 및 行動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身體的 精神的으로 장애를 가진 老人들에 대한 福祉施設이나 서비스는 現在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또 경제적으로 곤란한 老人에 대한 生計保護法에 의한 公的扶助가 있으나 그 扶助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극히 미흡하고 또 빈곤한 무의무탁한 老人의 收容保護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그 保護內容도 크게 改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社會福祉가 잘 된다고 해서 모든 人間問題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先進國의 老齡年金수혜자의 많은 數가 빈곤계층에 있음은 一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즉 美國에는 1970年 調査에 의하면 全老人人口의 83%가 老人年金을 타고 있으나 그 中 44%가 빈곤계

다 한다. 이처럼 現先進國의 社會福祉도 人間의 物心兩面 어느쪽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한 채 그 限界를 뛰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急激한 경제성장과 工業化에 國力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現實에서는 社會福祉施策 특히 老人에 대한 福祉施策이 극히 소극적이며 後進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음은 불가피한 事實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西歐의 老人保護는 그들의 傳統과 文化에 따라 社會保險의 形態로 발달되고 있는데 이에 西歐社會의 動的이고 個人主義的 思考方式, 핵가족제도, 物質숭배의 思想, 自由競爭등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西歐制度가 우리 社會에 直接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理由는 우리 社會는 靜的이고 大家族制度로서 조상숭배, 上下순종, 老人존중 등의 文化傳統을 維持하여 온 관계로 西歐制度의 移入에는 문제가 뒤따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西歐의 老人保護의 좋은 點과 우리 在來의 老人保護의 좋은 點을 상호 統合하여 우리 固有의 家庭生活과 文化를 強化시킬 수 있는 方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III

先進國의 現 老人福祉施策의 한 例로 西獨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生計費원조 ② 疾病원조 ③ 예방적 건강원조 ④ 휴양원조 ⑤ 障害者에 對한 사회재활원조 ⑥ 盲人원조 ⑦ 간호원조 ⑧ 家事원조 등이 있고 이외에도 老齡으로 인한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의 해결과 老人의 孤獨感을 防止하고 있다 한다. 그 具體的인 例를 보면 生計費扶助에 있어 65歲以上の 老人에 對해서는 그 基礎額에 30%를 더 加增하여 支給하고 있으며 또 老人保護로서는 養老院, 특수노인 양노시설, 老人센터, 老人클럽, 老人給食施設 및 老人住宅등이 있다. 獨逸以外的 先進各國의 老人福祉事業은 위의 種目以外에도 老人들에 對한 稅制上的 特혜, 운동경기, 장기자랑, 공예, 교양강좌, 불우한 사람들기, 老人을 위한 특수도서관, 관광여행 野外老人잔치, 옛노래자랑, 이야기경연회, 낚시, 老人所持 貴重品の 展示, 독서, 對話, 各種 社會奉仕活動등이 있다. 그리고 現在 先進國에서의 特異한 老人保護로는 一般家庭에 老人委託保護를 하고, 또 젊은 부부가 孤獨한 老人을 養父母로 모시는 例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美國에서 老人村運動이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개방하는 老人서비스 施設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X

現 우리 老人生活의 具體的인 面을 살펴보면

- ① 배우자의 死別 또는 親知의 상실로 대인관계가 고독하게 되고
- ② 獨立自活的 能力이 상실되어 他人에게 의존생활을 하게 되고

- ③ 男子는 직장취업에서 은퇴하게 되고 女子는 가정경제권을 포기하게 되며
- ④ 社會 및 家庭에 있어서 上位에서 下位로 地位가 低下되고
- ⑤ 경제적 이해관계의 감소로 인하여 生活범위가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 ⑥ 生理的 老化현상의 증가로 인하여 身體的 不自由 또는 만성질병이 加重되며
- ⑦ 日常生活에 對한 希望과 계획에 대해서 흥미를 상실한다.

現實老人生活에 있어서는 最少限의 물질적인 욕구충족은 불가결하다. 이와 동시에 정신적 욕구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일층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 옛말에 “老人은 무엇보다 마음이 平安하여야 한다.”라고 함과 같이 老後의 안락한 생활은 子女, 家族 및 친지들과 더불어 親近한 대인관계를 유지함에 있다. 이는 모든 人間에게 共通하다 하겠으나 老人에 특히 절실한 문제라 하겠다. 眞正한 精神的 安易는 人間社會에 있어 幸福한 가족관계 以外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重要한 것이 幸福한 가정인 것과 같이 老人들의 幸福하고 安易한 生活 역시 좌복한 아들 딸 및 손자녀가 동고동락하는 가정생활이라 하겠다.

X

우리나라의 老人福祉事業은 農村과 都市간에 多少 相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農村老人은 一般的으로 現在 농번기의 生産作業 때문에 過勞한 상태에 있으며 都市老人은 매일 여가시간을 如何히 사용하느냐에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日常生活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老人문제는 都市老人問題가 더 시급하다. 이들에게는 여가시간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다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복지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 하나의 方案으로서 一定한 種目的 職業은 老人에게만 許容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복덕방業을 洞老人亭과 併合하면 여러 老人들에게 혜택도 가고 老人亭 운영비도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담배 및 가두신문판매등의 種目도 이에 적당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것이 이루어지자면 우선 老人福祉에 관한 立法이 이루어져야 한다. 老人福祉施策은 그 社會 老人의 欲求 및 實情에 알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老人保護에 가장 핵심이 되는 問題는 老人들의 子女 및 家庭을 中心으로 하여 이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하느냐 또는 그들의 家族으로 부터 老人을 분리하여 이들을 保護하느냐 함이 먼저 決定되어야 한다. 現 先進國의 老人保護는 社會保障制度 또는 老人年金法등을 制定하여 老人을 그들의 子女 및 家族들로 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 結果 젊은 子女들은 老父母의 扶養義務를 社會保障 또는 社會에 전가하는 경향으로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先進國의 老人으로서 혼자 아파트에 居住하는 者가 死亡하여도 그날로 발각되지 않고 4~5日後에 그 管理人에 의하여 발견되는 일이 많다 한다. 이와같은 先進國의 老人의 終末은 그들의 핵가족제에도 그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先進國의 事例를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固有의 家族制度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평가를 加味하여 우리 家庭이 老人, 壯年 및 아동들이

